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7
----------	----

제출년월일 : 1995. . . .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지방공사의료원을 운영함에 있어 의료원장의 지나친 신분보장과 연임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의료원경영의 책임성을 확보하여 의료원경영을 개선하고자 관련조항을 개정

주요골자

- 의료원 임원중 원장의 연임횟수를 1회로 단축
 - 2회 연임 → 1회 연임
 - 연임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연임 할 수 있도록 변경
- 의료원장 면직요건을 변경
 -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위원회의 해임건의가 있을 경우 → 당해 의료원 이사회에 해임건의가 있을 경우를 추가

첨 부

1.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증 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 대비표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원장은 경영실적평가결과 그 실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위원회의 해임건의가 있거나, 당해 의료원 이사회에 해임건의가 있을 경우 도지사는 원장을 면직시킬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1조제1항 개정규정 적용에 있어 이 조례시행일 현재 재직중인 원장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에 의한다.